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문

1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개요

-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 받았음

명 칭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관 할	전북
담당자 연락처	063-250-2600, 2370

- 연명의료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위탁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 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2 용어의 정리

- 공용윤리위원회 :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역의 소규모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워 그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말함.
- 위탁 의료기관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는 의료기관을 말함. 이 경우 위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봄

3 공용윤리위원회의 업무 위탁 범위

- 위탁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상담]**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 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담을 제공함
 - (상담 제공 시간) 통상근무시간(오전 08:30 ~ 오후 5:30)에 가능함
 - (상담 제공 방법)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함
 - 방문상담 :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의료사회사업팀 방문
 - 전화상담 :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T.063-250-2600)와 통화
 - 온라인 상담 :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회원가입 ➡ 사회공헌 ➡ 연명의료결정법 ➡ 온라인 상담 신청
 - (상담기록의 보관) 상담 후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함. 위탁 의료기관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기록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 (교육 방법) : 위탁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소집하여 집단교육
 - (제공 시기) : 연 2회 기본 제공(협약 후 1개월 이내 교육진행 예정, 집합 교육이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 교육에 참석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 포함)
 - (교육 내용)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절차 안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과 관련한 서식 작성 및 처리방법,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인의 의료윤리 등
 - (교육기록 관리) 교육 시행 후,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내용 및 이수자 명단 등을 기록하고 관리

- **[심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상담 중 수탁 공용윤리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결정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심의신청 절차)
 - 위탁 의료기관 소속 의사 :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신청서(의료진용)’ 작성 -> 접수(전북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팀) -> 확인(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 상정(공용윤리위원회)
 - 위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상담)요청서(환자 또는 가족)’ 작성 -> 접수(전북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팀) -> 확인(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 상정(공용윤리위원회)
 - (회의개최 기준)
 - 회의는 심의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즉시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함

- (회의방법)
 - 심의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상이나 전자 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음
 - 심의 후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탁 의료기관 및 심의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함(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4 위탁 협약 체결 기준 및 절차

- [위탁 협약 기간] 위·수탁 협약 기간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가능(별도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등록관리] 협약체결 후 익일부터 등록 가능함.
- [신청절차] 신규 협약신청 ➔ 서류검토 ➔ 검토결과 안내 ➔ 협약체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메일) 또는 원본서류 우편 신청 등
 - 업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황라현 (24410@jbuh.co.kr)
 - 우편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의료사회사업팀(공용윤리위원회) 귀중
- [신청 시 제출서류]
 -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위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현황 자료
 - 진료과목, 병상 수 및 의료진 자료
 - 진료현황 자료
 - 인력, 시설, 장비 자료 등

- **[위탁 협약 체결방법]** 위탁 의료기관장 및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 및 간인을 한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2부(각 1부씩 보관)를 작성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
 - (제출방법)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의료사회사업팀

4] 위탁 협약 비용 납부

- **[협약 비용]** 기본 200만원/년 (심의 의뢰 시, 의뢰 1건당 15만원 추가)

기본 (200만원)	상담	- 업무시간 중 수시 응대 (전화 상담, 온라인상담 등 실시)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관리	- 공용윤리위원회 기본 지침 교육자료 및 정보 공유 및 제공 - 기타 연명의료관련 기관 문의 응대 등	
	교육	-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 추가교육 실시 여부 및 그 형태, 비용 등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과 무관하게 기관 간 합의로 결정	20만원
추가	심의		의뢰 건당 15만원

※ 병상수가 3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른 위탁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납부 기간]**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납부
 - ※ 추가 심의건 발생 시 해당 심의 접수 완료 후 심의비 청구

○ **[협약 비용 납부]**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02-778-7564)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기관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구분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진료과목			
의사 수		병상 수	

담 당 자 정 보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협 약 사 항	
협약신청사유	
협약신청기간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년

위와 같이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협약신청 의료기관장: _____(인)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00 의료기관(위탁 의료기관)과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 의료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

- 가. 위탁 의료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상담
- 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라.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 마. 위탁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 【수탁 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 의료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 의료기관의 의무】

위탁 의료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탁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수탁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비용】

위탁 의료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2019년 월 일

(위탁 의료기관)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00 의료기관의 장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